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中華人民共和國商標法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 제1차 개정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 제2차 개정

2012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3차 개정

###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의 등록출원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와 비준

제4장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변경·양도와 사용의 허가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 제8장 부칙

### 제1장 총칙

제1조 상표 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며 생산·경영자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상표의 신용을 수호하여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 상표국(國務院工商行政管理部門商標局)은 전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상표심사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를 설치하여 상표분쟁사무를 담당한다.

제3조 등록상표란 상표국의 등록심사 비준을 받은 상표를 말하며, 상품상표·서비스상표·단체상표·증명상표를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상표전용권(商標專用權)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서 단체상표(集體商標)란 단체·협회·기타조직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를 말하며 조직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당해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지를 뜻한다.

이 법에서 증명상표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 능력을 갖춘 조직이 통제하고 당해 조직 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여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원재료·제조방법·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지를 말한다.

단체상표·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사항은 국무원 상공행정 관리부서(國務院工商行政管理部門)가 정한다.

제4조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영업 활동 중 그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의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한다.

제5조 2인 이상의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동일상표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표국에 등록 출원하여 공동으로 상표권을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법률·행정 법규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은 반드시 상표의 등록출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상표의 등록출원과 사용은 마땅히 신의성실의 원칙(誠實信用原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표사용인은 마땅히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상품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모든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자·도형·자모·숫자·3D표지·색채의 조합 및 소리 등의 모든 표

지 및 상술한 요소의 조합에 대하여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제9조 상표를 등록출원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타인이 우선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다음의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국기·국장·국가·군기·군장·군가·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및 중앙 국가기관의 명칭·표지·소재지의 특정 지점의 명칭 또는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경우

(二) 외국의 국가명칭·국기·국장·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단, 당해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三)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깃발·회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단, 당해 조직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공중이 오해할 여지가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四) 통제의 실시 및 통제의 보장의 부여를 표시하는 정부 당국의 표지·검증 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단, 수권한 경우는 제외한다.

(五) “적십자(紅十字)”, “적신월(紅新月)”의 명칭·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六) 민족적 차별성이 있는 경우

(七)기만성이 있는 경우 및 공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정 또는 생산지를 오인하기 쉬운 경우

(八)사회주의 윤리도덕을 저해하거나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지명 또는 공중이 알고 있는 외국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단체상표·증명상표의 구성부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등록된 지명을 사용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다음의 표지는 상표로 등록 할 수 없다.

(一)당해 상품의 통용 명칭·도형·치수로만 된 표지

(二)상품의 품질·주요 원료·효능·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지

(三)기타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 표지

전항에서 열거한 표지가 사용을 통하여 현저한 특징을 획득하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 상표로 출원할 수 있다.

제12조 3D표지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오직 상품 자체적 성질에서 유래한 형상이거나 기술적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이 실질적 가치를 갖게 하는 형상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 관련된 공중이 숙지하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해당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질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유명상표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유명상표를 복제·위조하거나 유명상품을 번역하여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위조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유명상표의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 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유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유명상표의 인정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유명상표의 인정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一) 관련 공중에게 당해 상표가 알려진 정도
- (二)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기간
- (三) 당해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의 지속기간 및 정도와 지리적 범위
- (四)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 받은 기록
- (五) 당해 상표가 유명하게 된 기타 요소

상표등록 심사 및 상공행정관리부서 조사기관이 상표법 위반사건을 처리 과정 중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국은 심사 및 처리 사건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유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 심판처리 과정 중 당사자가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처리 사건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의 민사사건 및 행정사건 심리과정 중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심리 사건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생산·경영자는 유명상표(馳名商標)문구를 상품 및 상품포장·상품용기·광고홍보·전시 또는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대리인 또는 대표인이 수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 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당해 타인이 전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업무 거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당해 타인의 상표존재를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상표 중에 상품의 지리적 표지가 있으나, 상품이 당해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유래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한 경우 상표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 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단, 이미 선의로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다.

전항의 지리적 표지란 모종의 상품이 모 지역에서 유래하고 당해 상품의 특정품질, 신용 및 기타 특징이 주로 당해 지역의 자연적 요소 혹은 인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표지를 가리킨다.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그 소속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상호주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상표대리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피대리인의 위탁에 의해 상표를 등록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업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상표대리기관은 대리과정 중에 알게 된 피대리인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의뢰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에 이 법에 규정된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상표대리기관은 의뢰인이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 제15조 또는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경우 당해 의뢰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표대리기관은 당해 상표등록 출원대리 서비스 이외에 기타 상표의 등록 출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상표대리산업조직은 정관에 따라 가입 회원의 조건을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범을 위반한 회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상표 대리 산업 조직은 가입 회원 상황과 회원의 징계상황을 적시에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 상표의 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 제2장 상표의 등록출원

제22조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상품 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와 상품 명칭을 기입하여 등록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한 번의 출원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의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상표의 등록출원 등 관련 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상표가 사용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하여

야 하는 경우 별도로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등록상표가 당해 표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다시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상표의 등록출원인이 외국에서 처음 상표의 등록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중국에서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출원하는 경우 당해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우선권 승인(相互承認優先權)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상표의 등록출원 시 제출한 서면으로 당해 취지를 주장한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3개월 이내에 처음 제출한 상표의 등록출원 문서의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성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을 넘기고도 상표의 등록출원 문서의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품을 전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상표의 등록출원인이 우선권을 향유한다.

전항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상표의 등록출원 시 제출한 서면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3개월 이내에 상품을 전시한 박람

회의 명칭, 전시 상품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 전시 기한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도 증명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기 위하여 기재한 신고사항 및 제공하는 자료는 진실·정확·완벽하여야 한다.

###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와 비준

제28조 상표의 등록출원에 있어 상표국은 상표의 등록출원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초보심사 결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사 과정에 있어 상표국은 상표의 등록출원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 또는 수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조 상표의 등록출원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서 이미 등록한 경우 또는 초보심사 결정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상표국은 당해 상표의 출원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1조 2인 또는 2인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를 출원공고 결정하여 공고한다. 동일한 날짜에 상표가 등록출원된 경우 먼저 사용된 상표에 대하여 초보심사 결정을 하고 공고하며 그 밖의 자의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상표의 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한 선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갈취하여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초보심사 결정이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권리자, 이해관계인은 이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제15조·제16조 제1항·제30조·제31조·제3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모든 사람은 이 법 제10조·제11조·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 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34조 출원이 기각되고 이를 공고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의 등록출원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장하

여야 하는 경우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의 기준을 거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 초보심사 결정이 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의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이유를 청취하고 조사하여 확인한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정황이 있어 연장하는 경우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의 기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허가 결정하는 경우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 법 제44조·제4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 당해 상표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피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의 기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자에게 제삼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 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마땅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제36조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상표국의 출원 기각 결정, 등록 불허 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출원기각 결정과 등록 불허결정, 재심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의 조사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 허가된 상표에 있어 상표의 등록출원인이 상표권을 취득한 시기는 초보심사 결정 공고 후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당해 상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등록 결정을 하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단, 사용인이 악의적으로 상표 등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 상표의 등록출원과 상표의 재심신청은 즉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상표의 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인은 상표출원 문서 또는 등록 서류상에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

권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의 오류 정정은 상표 출원 문서 또는 등록 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관련되지 아니한다.

## 제4장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변경·양도와 사용의 허가

제39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등록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0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상표 등록인은 기간 만료 12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매 갱신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직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당해 상표등록을 말소한다.

상표국은 등록을 갱신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등록상표에 등록인의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데 있어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 등록인은 동일 상품 상에 등록된 유사상표

및 유사 상품 상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도 일괄 양도하여야 한다.

혼동을 초래하기 쉽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도에 대하여 상표국은 등록을 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등록상표 양도를 비준한 후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권을 향유한다.

제43조 상표 등록인은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생산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한 경우 허가인은 당해 상표사용 허락을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하여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표 사용허락을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44조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0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국은 당해 상표의 등록 무효를 선고한다.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당해 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선고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의 심의 결정 과정에 상대편 당사자가 제삼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3조제2항과 제3항·제15조·제16조제1항·제30조·제31조·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인 등록의 경우 유명상표의 소유인은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선고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심의 결정과정의 상대 당사자에게 제삼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 중이거나 행

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다른 안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심사절차는 마땅히 회복되어야 한다.

제46조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상표국이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과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등록상표의 무효선고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의 결정과 상표심사위원회 재심결정, 재정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 이 법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는 상표국이 공고하며 당해 등록상표권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결정 또는 재정은 무효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에서 진행 및 집행한 상표침해 사건의 판결·재정·조정서와 상공행정관리부서가 진행 및 집행한 상표 침해 사건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상표의 양도 또는 상표 사용허락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단, 상표 등록인이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마땅히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침해 배상금·상표 양도비용·상표 사용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공평원칙을 위반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8조 이 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상품포장·용기 및 상품거래문서 상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광고 홍보·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 중에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9조 상표 등록인이 등록상표 사용과정 중에 등록상표·등록인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수정한 경우 지방 상공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상표가 사용을 승인한 상품의 통용 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정황으로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 등록상표가 취소·무효선고를 받거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취소·무효선고·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의 등록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이 법의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지방 상공행정관리부서는 기한 이내에 등록출원할 것을 명령하며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

득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속여 사용한 경우 또는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이 법의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이를 제지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이를 통보하고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을 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 이 법의 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상표국이 내린 등록상표의 취소 또는 취소불가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서면으로 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법정 기간이 만료되고 당사자가 상표국이 결정한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록상표의 취소결정과 재심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이 이를 공고하며 당해 등록상표전용권은 공고일 부터 중지된다.

##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56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당해 등록이 결정된 상표와 사용을 승인한 상품에 한한다.

제57조 다음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 (一)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二)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 (三)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를 판매하는 경우
- (四)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임의제조하거나, 위조·임의제조한 등록상표의 표지를 판매하는 경우

(五)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한 상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六)타인의 상표전용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七)타인의 등록상표권에 그 밖의 손해를 입힌 경우

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미등록된 유명상표를 기업의 명칭의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조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 정  
당경쟁법(中華人民共和國反不正當競爭法)>에 따라 처리한다.

제59조 등록상표 중에 포함된 상품의 통용 명칭·도형·모델과 상품의 품질·주  
재료·효능·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 또는  
지명에 대하여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3D표지 등록상표에 있어 상품 자체의 성질에 의한 형상이거나 기술적 효  
과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이 실직적 가치를 표시  
하는 형상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상표권자가 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타인이 이미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보다 먼저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일정한 영향을 가진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전용권자는 당해 사용자가  
본래 사용범위 이내에서 계속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나 적

절한 구별 표시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이 법의 제57조에 나열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 중 하나에 당해하

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

하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

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공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 침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면 즉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 제조·등록상표 표시의

위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소각한다.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

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상표침해행위가 있거나 기타 엄중한 경위가

있을 경우 법적 한도 이내에서 엄벌하여야 한다.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상

표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였거나 당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

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서가 판매의 중

지를 명령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에 대한 분쟁에 있어 당사자는 상공행정관리부서

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華人民共和國

民事訴訟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부서

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정서가 효력을 받



생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공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권리가 있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적시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 현금 이상의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이미 취득한 위법 혐의의 증거 또는 고발을 근거로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시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 관련 당사자의 심문과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정황의 조사

(二) 당사자의 침해활동과 관련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

(三) 당사자가 타인이 등록한 상표전용권 침해 활동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四)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의 검사. 타인이 등록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물품의 차압 또는 압류

상공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하는 직권을 행사하는 시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표 침해 사건 조사과정 중에 상표권 존재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분쟁과

동시에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공행정관리 부서는 사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후 사건 조사 과정은 회복되거나 종결되어야 한다.

제63조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에 의해 입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권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권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의 사용허가비용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에 1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한 지출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이미 전력을 다해 증거를 제공하였으나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를 침권자가 장악한 경우 침권자에게 침해행위 관련 장부·자료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침권자가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장부·자료일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인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결한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받은 실제 손실, 침권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상표허락 사용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제64조 등록상표의 상표전용권자가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고소를 당한 침권자가

등록상표의 상표전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의 상표전용권자에게 과거 3년 이내에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의 상표전용권자가 과거 3년 이내에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침해행위로 인한 기타 손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고소된 침권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등록상표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판매하였으나 당해 상품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5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할 예정인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명령 및 재산보전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표등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 상표등록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 상품에 당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침권자에게 손실배상 이외에도 법에 따

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표시를 위조·임의제조하거나, 위조·임의제조된 등록상표의 표시를 위조·임의제조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침권자에게 손실배상 이외에도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등록상표의 상품이 위조품인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침권자에게 손실배상 이외에도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8조 상표대리기관의 행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상표 사무처리 과정 중에 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된 법률문서·인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二)기타 상표대리기구 등을 비방하는 등의 수단으로 상표대리 업무를 유치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 대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三)이 법의 제19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대리기관에 전항이 규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신용분류문건에 등록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표국·상표심사위원회는 당

해 상표 대리 사무 처리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한다.

상표대리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위탁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표대리 산업조직의 정관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69조 상표등록·관리와 재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으로 직무에 충실하며 진보적으로 국민에 봉사하여야 한다.

상표국·상표심사위원 및 상표의 등록·관리·심의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담당자는 상표 대리업무와 상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70조 상공행정관리부서는 건전한 내부감독 제도를 건립하고 상표의 등록·관리·심의업무에 있어 국가기관 업무자의 법률·행정법규의 집행과 규율의 준수 정황을 감독하고 감사하여야 한다.

제71조 상표의 등록·관리·심의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담당자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상표의 등록·관리·심의업무를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재물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 제8장 부칙

제72조 등록상표의 출원과 기타 상표사무의 처리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 수취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3조 이 법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상표관리조례(商標管理條例)>는 동시에 폐지한다. 기타 관련 상표관리 규정에 있어 본 법과 저촉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